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형 생활주택 중 “소형 주택” 유형을 “아파트형 주택” 유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주택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4. 00. 00. 공포, 2024. 00. 00. 시행)됨에 따라, 사업계획신청 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을 보완하는 한편,

주택 관련 인허가 민원의 처리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계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인허가 처리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의무화하고, 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 제목 “(주택정보체계 구축·운영)”을 “(주택정보체계 구축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용검사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,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건축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업무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 중 제2쪽의 비고란과 제3쪽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비고 | <div> 도시형 생활주택([ ]아파트형 [ ]단지형연립 [ ]단지형다세대 ): 세대, 공공주택: 세대<br/> 토지임대부 ([ ]분양 [ ]임대)주택: 세대, 세대구분형 공동주택: 세대 </div> <div>※ 도시형 생활주택, 공공주택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,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.</div> |
| 비고 | <div> 도시형 생활주택([ ]아파트형 [ ]단지형연립 [ ]단지형다세대 ): 세대, 공공주택: 세대<br/> 토지임대부 ([ ]분양 [ ]임대)주택: 세대, 세대구분형 공동주택: 세대 </div> <div>※ 도시형 생활주택, 공공주택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,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.</div> |

별지 제22호서식 중 착공예정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      |  |         |  |
|-------|--|---------|--|
| 착공예정일 |  | 사용검사에정일 |  |
|-------|--|---------|--|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정보체계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7조(주택정보체계 구축·운영)<br>(생략) | 제37조(주택정보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용권자<br>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,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건축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